

현 행	변 정(안)	비 고
<p>(신 설)</p> <p>제38조(정보제공·활용 동의) ① (생 략) ②은행은 이용자의 정보, 발행·수취·배서·<u>보증</u> 등의 정보를 관련 법령, 관련 약관 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.</p> <p>제39조(면책) ~ 제44조(재판관할 및 준거법) (생 략)</p> <p>(붙임) 전자어음 이용 신청서 (생 략)</p>	<p>②관리기관은 사고신고 내역을 등록하고, 사고신고 등록 당시의 수취인, 배서인, 보증인 및 소지인과 발행인 중 관련법령에 따라 핸드폰 번호 또는 e-mail 정보 이용이 가능한 이용자에게 SMS 또는 e-mail로 사고신고 등록사실을 통지한다.</p> <p>③발행인은 은행에 신고한 사고신고 내역과 관리기관이 등록한 사고신고 등록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<u>제37조의 3(사고신고 등록정보 조회)</u> 다음 각 호의 이용자는 유통중인 전자어음에 한하여 관리기관 또는 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신고 여부 및 사고신고 일자 등 사고신고 등록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.</p> <p>1. 발행인 2. 수취인, 배서인, 보증인 및 소지인 3. 전자어음을 배서받으려는 이용자</p> <p>제38조(정보제공·활용 동의) ① (좌 동) ②은행은 이용자의 정보, 발행·수취·배서·<u>보증·사고신고 내역</u> 등의 정보를 관련 법령, 관련 약관 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.</p> <p>제39조(면책) ~ 제44조(재판관할 및 준거법) (좌 동)</p> <p>(붙임) 전자어음 이용 신청서 (좌 동)</p>	<p>-조 신설 (사고신고 등록 정보 조회근거 명시)</p> <p>-문구수정 (사고신고 내역 추가)</p>